


| | | | |
|---|----------------------|------|-------------|
|  | <h2>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h2> | 표준번호 | 교무행정 6-16-1 |
| | | 제정일자 | 2012. 7. 4 |
| | | 개정일자 | 2017. 2.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현장실습 통합지원 및 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9)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를 실습으로 구성하거나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학기단위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실습학기제현장실습이라고 정의하며 대학의 현장실습은 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개정 2016.2.29, 2017.2.27)

②실습학기제는 전일제(1일 6시간이상 8시간 이내)로 4주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권장한다.(신설 2016.2.29, 개정 2017.2.27)

③ (삭제 2017.2.27)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현장실습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명시하여 학과에서 개설 관리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절차)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과목이 편성된 학과의 재학생으로 2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절차는 “현장실습운영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2012.12.11)

제2장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제5조(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①학과장은 현장실습에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7.2.27)

②대상 업체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

1. 중소기업 기술지도 업체
2. 산학협동 결연업체
3. 학과의 전공분야 관련 업체
4.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한 업체
5. 현장실습 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제6조(현장실습 협약 체결) 학생현장실습은 대학과 실습협약이 체결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12.11)

제3장 현장실습

제7조(현장실습 계획) 학과는 현장실습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당해 연도 현장실습실시계획서를 취

업지원처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2017.2.27)

1. 현장실습 일정 및 대상학생 파악
2. 현장실습 대상 업체 선정, 실습기관 담당자 선정 및 학생배정 계획(개정 2017.2.27)
3. 현장실습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4. 현장실습 사전교육계획
5. 지도교수배정 계획
6. 기타 현장실습에 따른 제반사항

제8조(현장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대상학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대상 업체의 현황, 실습예절 및 방법, 현장실습일지 작성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학과에서 실시한다.(개정 2017.2.27)

제9조(실습생의 의무) ①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인지한 당해 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현장실습 성적을 무효로 하고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 처리할 수 있다.

③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과로 연락하여야 한다.

제10조(순회지도) ①현장실습 교육의 실태를 파악 지도하고, 현장실습 교육의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과 지도교수는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 순회지도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 교내 교직원여비규정을 근거하여 교통비 및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현장실습 순회지도 교수는 현장실습 순회지도 후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2015.10.19., 2017.2.27)

제11조(현장실습 일지의 작성) ①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 시 지참한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실습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7)

②제1항에 위배된 현장실습은 그 성적을 무효로 한다.

제12조(학생 및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①현장실습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생의 교통비, 보험료, 실습지도비, 산업체 협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처를 제공한 산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실적에 따라 산학협력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6.10.4)

③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보호의 책임이 있는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7.2.27)

④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산업체가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2.27)

⑤학생 현장실습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0.4, 항변경 2017.2.27)

제4장 평 가

제13조(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①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에 현장실습 일지(현장실습성적평가서 포함)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7)

②학과는 실습종료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현장실습현황관리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며 출력물 1부와 실습결과보고서를 담당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③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7.2.27)

제14조(성적평가의 처리) ①학생이 취득한 성적은 당해학기의 현장실습 성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현장실습 후 휴학 등으로 당해 학기 성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성적은 복학 후 현장실습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성적 평가는 실습일지, 현장책임자평가, 순회지도평가, 실습일지 작성 등을 고려하여 학과 특성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2.27)

제15조(관계서류의 보관) 학생 현장실습교육에 관계되는 서류는 졸업 후 3년까지 소속 학과에서 보관해야 한다.

제5장 현장실습지원센터(삭제 2017.2.27)

제6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삭제 2017.2.2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 전의 학생 현장실습 시행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3.1.자로 계열이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의 “계열 및 계열부장” 명칭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3월 1일부터 적용한다.